보 도 자 료

일시	2020. 04. 16. (목)	담당자	권주리 사무국장 02-6348-1318 [redacted]

서울시 영등포구 [redacted] http://www.teen-up.com/

전 화	02-6348-1318	전 송	02-2690-1255	teen-up.com@hanmail.net

이제 총선은 끝났다.
20대 국회는 '아청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마지막 소임을 다하라

십대여성인권센터는 현행 '아청법'의 '대상아동·청소년' 개념을 삭제하는 데에 동의하기로 한 법무부의 결정을 열렬히 환영한다.

논평

그동안 본 센터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현행 '아청법'의 '대상 아동·청소년' 조항의 폐지, 미성년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들을 위한 전문 피해 지원 기관이 성인 성착취 피해자 지원기관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설치되어야 함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디지털 상에서 아동·청소년들을 성적으로 이용할 목적을 가진 성인들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어떠한 입법적, 행정적, 사법적, 기술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면서도,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대상 아동·청소년' 조항을 유지하겠다는 그간의 법무부의 입장은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자들을 신고할 수 없도록 막고 신고되지 않은 성범죄자들이 더욱 디지털 상에서 안전하게 아동·청소년들을 노릴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준 셈이라고 밖에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겠는가?

늦었지만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인권보호가 법무부의 본래 임무임을 재천명하고 성착취를 엄단하겠다는 추미애 장관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에서 법무부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가진 정부 부처의 수장이 성평등 인권의식을 가진 여성이라는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이제 모든 공은 국회로 돌아갔다. 2년 내내 법무부의 반대를 빌미로 안건으로 조차 상정하지 않은 채 계류시켜왔던 법사위는 더 이상 핑계를 댈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광범위하고 엄청나게 번져갔던 '미투' 국면을 통해 성평등 입법이 우후죽순 발의되었지만 거의 모든 입법안이 법사위에 발목이 잡힌 채 국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법무부의 입장 선회가 곧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법무부는 이번 단호한 결정과 함께 국회 통과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21대 국회를 결정하는 총선은 끝났다. 그동안 정쟁을 일삼으며 미뤄왔던 '아청법' 개정안을 21대 국회로까지 넘기지 말고, 20대 국회 해산 전에 반드시 통과시켜라. 그래서 n번방과 같은 '성착취' 범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국회, 사법부는 최선을 다하라. <끝>